오픈뱅킹공동업무 정의 및 진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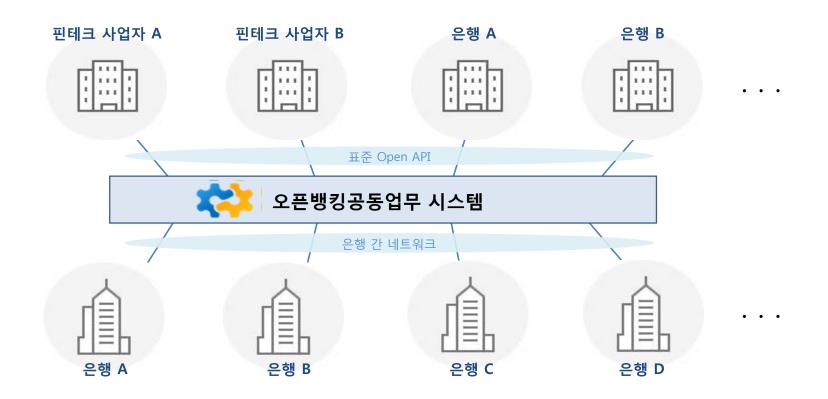
목차

- 1. 오픈뱅킹공동업무 정의 및 진행현황
- 2. 오픈뱅킹 업무 프로세스
- 3. 오픈뱅킹 개발 및 테스트

① 오픈뱅킹공동업무(공동 결제시스템) 정의 및 진행 상황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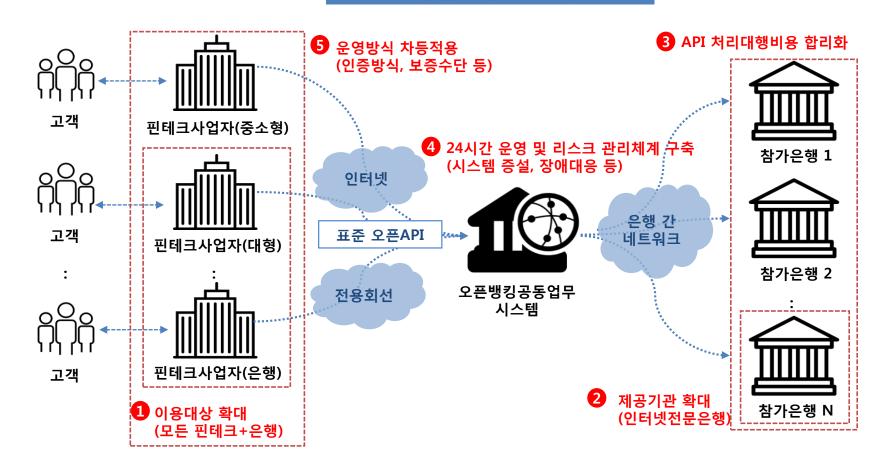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



⇒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 접속 만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 접속 효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 구축 현황

개념도(TO-BE)



① 이용대상 확대 - 승인기준

현행 중소형 핀테크사업자로부터 <mark>은행과 모든 핀테크사업자</mark>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확대

- 은행 또는 핀테크1) 사업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2)
 -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 오픈뱅킹 운영기관(금융결제원) 인정 기업

이용대상

- 1)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금융관련 업무('18.11.27, 금융위원회)
- 2)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은행 혁신성 평가 매뉴얼' 참고)

업종명	내용	업종명	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보안프로그램, OS, DBMS개발 등	자료 처리업	자료입력, 전환처리 등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회계용 S/W, CRM, ERP개발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	온라인포털, 정보제공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홈페이지, 맞춤형 S/W개발 등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학습, 증권정보제공 등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 SI업체 등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외국환, 어음교환 등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 컴퓨터장애복구 등		

① 이용대상 확대 – 제외대상 및 제외서비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 ·게임머니·아이템(중개) 또는 가상화폐³) 관련 사업모델 기업
- · 다단계 판매, 상조회사, 대부업
- · 미풍양속 저해,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 · 이용기관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상 필요자격 미달기업
- · 영업 행태에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는 기업
- · 기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 등

제외대상

- · 출금대행⁴⁾
- · 납부서비스⁵⁾

제외서비스

- 주3) 가상화폐 발행(ICO 포함) 또는 거래소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4)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수취인을 통해 전달받아 제3자가 출금을 대행하거나 동 권리를 재판매하는 경우
 - 5) 수납하려는 주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예약)하는 경우

제공서비스는 조회와 이체, ② 제공기관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제공서비스 내역		설 명
	잔액조회	소비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구성	거래내역조회	오마시가 이용기진이 제공하는 사마으를 중에 한국 및 기대대국을 오와할 수 있는 사마으
조회	계좌실명조회	이용기관이 소비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송금인정보조회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실명확인 의무이행을 위해 송금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금이체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
이체	출금이체	이용기관이 출금에 동의한 소비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집금할 수 있는 서비스

- 제공기관
 - 현행 일반은행(16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18개 제공기관으로 우선 확대
 - ※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적 참여 여부 예정(은행권 합의내용)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③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합

이용기관 수수료 = 처리대행비용(고정) + 주거래은행 수수료(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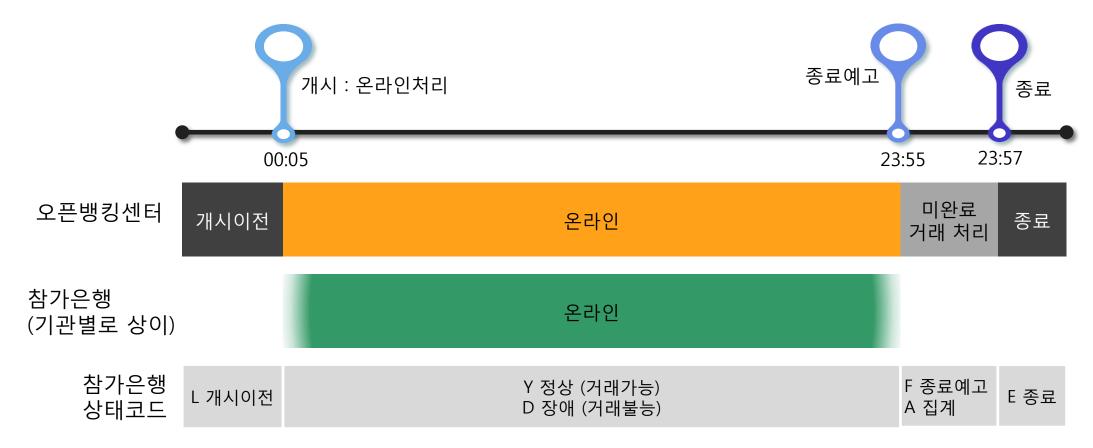
- · 처리대행비용 :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한 주거래은행이 오픈뱅킹 처리대가로 상대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고정비용
 - 이용시작 첫 월부터 경감비용을 부과하고, 해당 API의 경감기준을 3개월 연속초과할 경우 기본비용 부과 * 단, 경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기관은 첫 월부터 기본비용 부과 예정

<오픈뱅킹 처리대행비용 조정안(이체 API 기준) >

구분	현행 비용	기보비용/대형)	- - - - - - - - - - - - - - - - - - -		경감기준	
丁 亚	건경 미 경	기준미중(대영) 	3648(2 ₂ 8)	거래금액(월)	거래건수(월)	
출금이체 API	500원	50원	30원	100억원	10만건	
입금이체 API	400원	40원	20원	II.	II .	

- * 은행권 실무협의 사항으로 최종수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
- · 주거래은행 수수료 : 이용기관과 주거래은행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 * 참가은행(18개) 중 하나를 주거래은행으로 선정 가능(핀테크사업자 계좌 관리은행)

센터 운영시간 **④24시**간 관리체계 구축 - (00:05 ~ 2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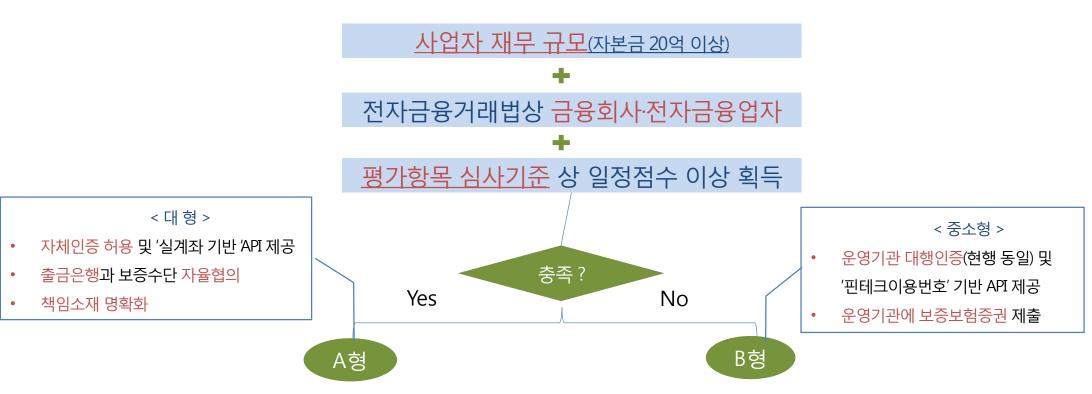


- ♣ 참가은행상태조회 API
 - 핀테크기업이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를 확인
 - https://openapi.openbanking.or.kr/v2.0/bank/status

재무 건전성, 리스크 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⑤ 이용기관별 운영방식을 차등 적용

차등 적용의 내용은 자체인증 허용여부, 출금한도 및 한도 수준별 보증수단 등

[차등 운영 기준(예시)]



※ (예시) 평가항목 심사기준 : 재무건전성(기업신용등급, 납입자본금, 회사업력, 영업이익 등) 리스크 관리(AML시스템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은행권 10월 시범 실시 후 12월 핀테크사업자까지 전면 시행

- 은행용 세부 전산설계요건 등 확정 배포(7월 1주)
- 이용대상 기관 앞 사전 이용신청서 접수(7월 24일~)
 - * 초기 이용신청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실시를 원할 경우 9월까지 신청 필요
- 사전 이용신청 기관 대상 보안성 점검 진행
- 이용대상 기관과의 표준 약관/계약서 등 제정(~10월)
- 제공대상 기관 확대 및 오픈뱅킹 전환 시행(10월 23일)
- 시범서비스 실시(10월 30일, 10개 은행)
- 본격서비스 실시(12월 18일, 16개 은행, 7개 대형사업자, 27개 중소형사업자 등)
 - * 핀테크사업자(토스, 카카오페이, 핀크, 뱅크샐러드, 세틀뱅크, 쿠콘, 디셈버앤컴퍼니, SBI코스머니 등)

2 오픈뱅킹 업무 프로세스

• 핀테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6가지 핵심 금융서비스로 구성 (총 23개의 API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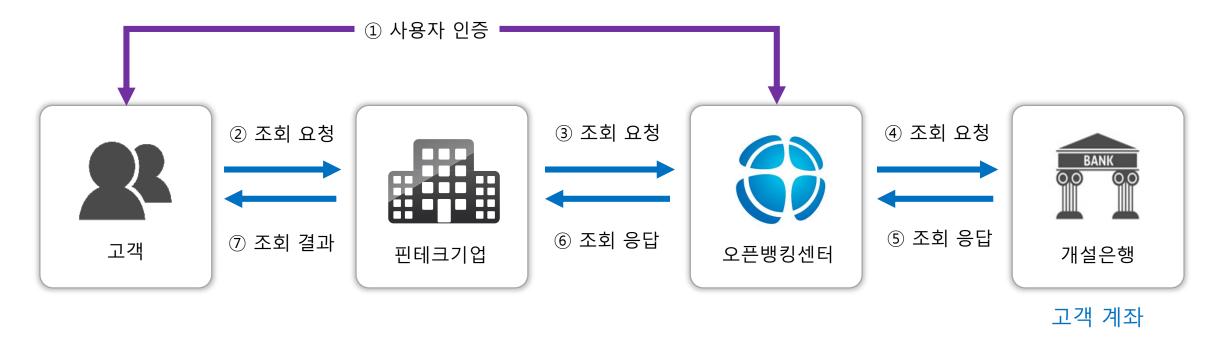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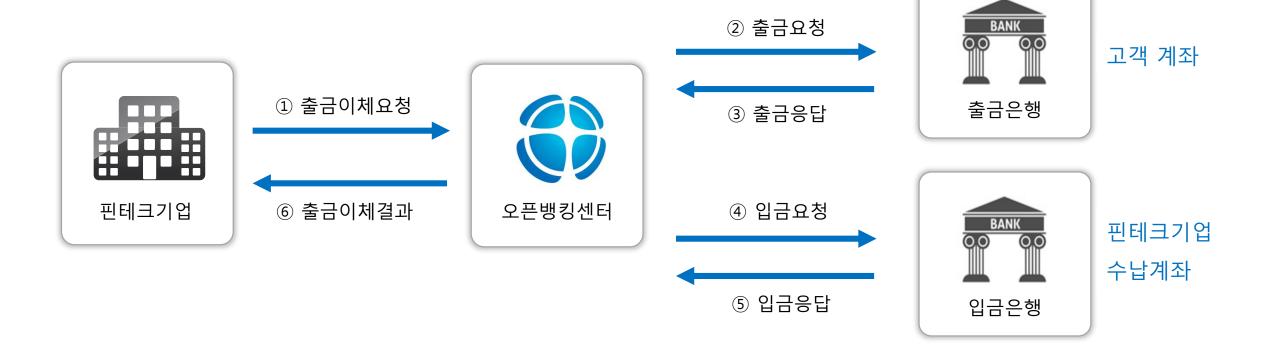
14 39

- 고객이 핀테크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에 대한
-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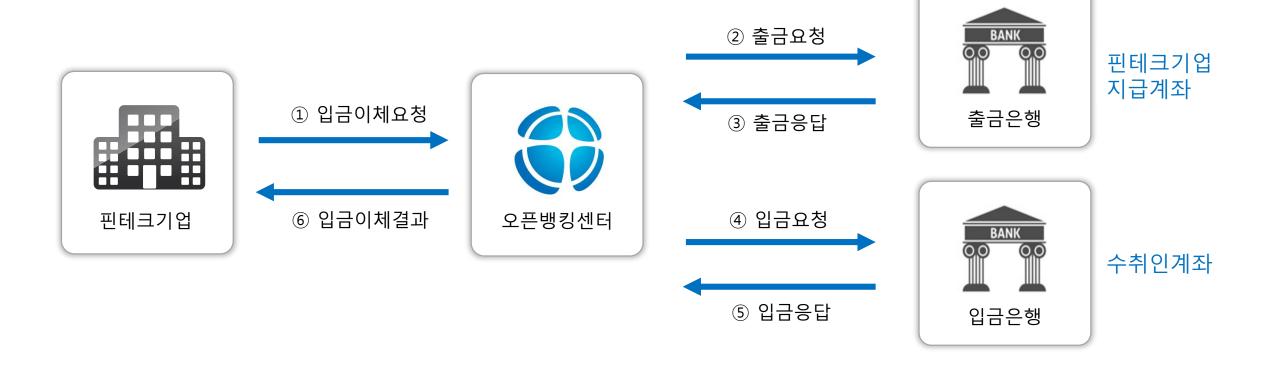


♥ 잔액조회의 경우, 수시 입출금 계좌 외에 정기성 예적금, 수익증권 계좌(펀드)도 조회 가능

- 핀테크기업이 출금에 동의한 고객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 핀테크기업 수납계좌로 실시간 입금 출금이체 API



• 핀테크기업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실시간 입금 - 입금이체 A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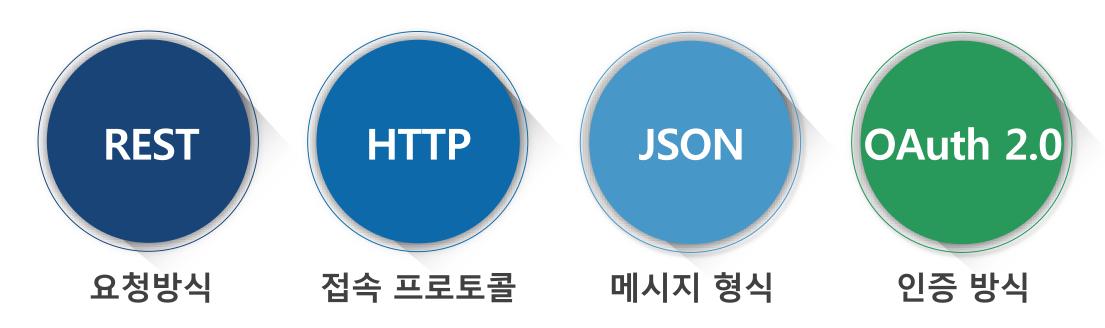


- 계좌실명조회 : 핀테크기업이 고객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
- 송금인정보조회: 해외송금업자 수취계좌로 입금한 송금인 성명과 계좌번호 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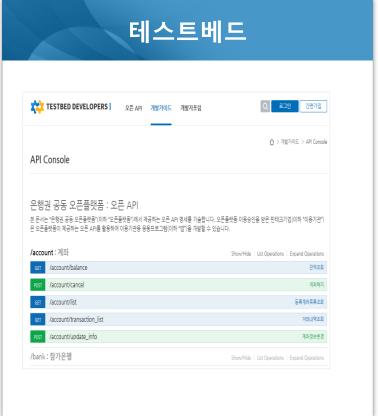
3 오픈뱅킹 개발 및 테스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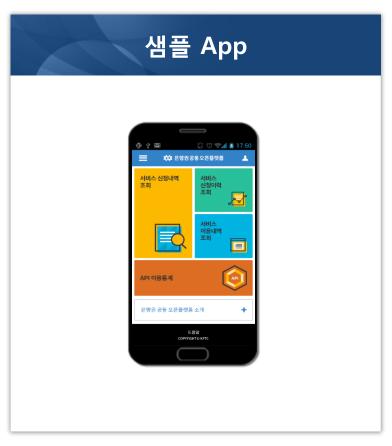
기존 전용회선 사용 (VPN포함)











다운로드하여 손쉽게 사용 다양한 API 테스트 지원 Web 개발 편의를 위한 샘플 소스 제공

API 콘솔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체험 개발·테스트 지원 (개발자포럼 게시판) https://developers.open-platform.or.kr 아이폰, 안드로이드 샘플 앱 제공 (E) 다양한 API 테스트 지원 모바일 개발을 위한 샘플 소스 제공

서비스 체험



테스트베드 간편가입

개발 테스트



서비스 개발 연동 테스트

이용신청



이용적합성 심사

서비스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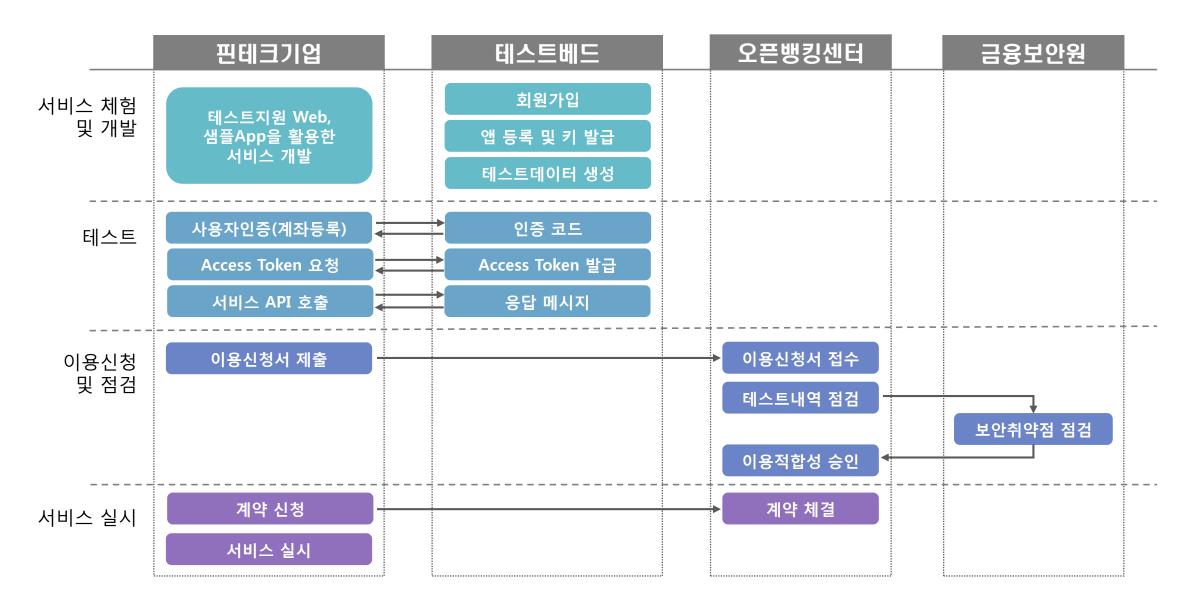


테스트 점검 취약점 점검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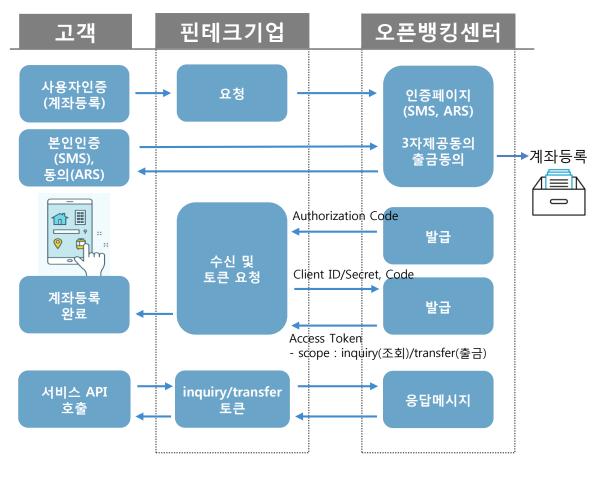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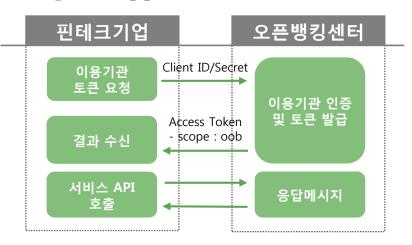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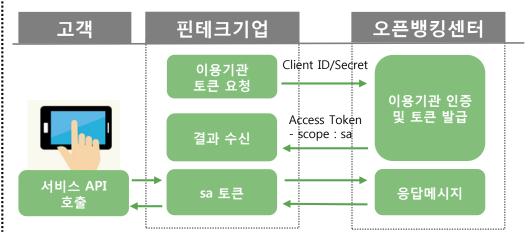
사용자 인증(3-legged)



이용기관 인증(2-legged)



자체인증 이용기관 인증(2-legged)



24

• 자금세탁방지 정보 수집을 위한 요청고객 정보(성명, 계좌, 회원번호)를 설정

• A고객이 B고객에게 이체 또는 B업체의 재화를 구매하고 결제를 요청

처리내용	송금인 실명	수취인 설명	고객 정보
① 출금이체 요청 (A 고객 → 핀테크기업)	А	핀테크기업명	A(요청고객)
② 입금이체 요청 (핀테크기업 → B)	핀테크기업명	В	A(요청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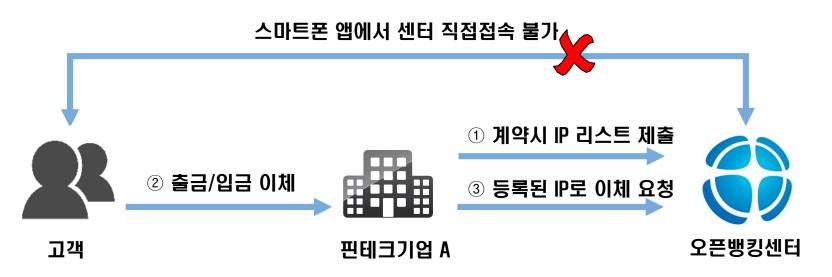
· A고객이 핀테크기업의 Point를 충전

처리내용	송금인 실명	수취인 설명	고객 정보
① 출금이체 요청 (A 고객 → 핀테크기업)	А	핀테크업체명	A(요청고객)

• 핀테크기업이 A고객 계좌소유인증을 위해 이체

처리내용	송금인 실명	수취인 설명	고객 정보
① 입금이체 요청 (핀테크기업 → A 고객)	핀테크기업명	А	A(요청고객)

- 화이트리스트 IP 관리 핀테크기업의 서버를 통한 API 통신
- 출금이체, 입금이체 거래는 등록한 IP를 통해서만 처리 가능



* IP white List

기업	IP
핀테크기업 A	203.9.9.1 203.9.9.2 :
핀테크기업 B	102.10.2.9 :
:	:

전자금융거래기록 보관

보관기간	종류	관련 법령
5년	거래 확인을 위한 거래일시, 계좌번호, 수수료, 출금동의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속기록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 22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7조, 12조
1년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2조 1항 2호

고객정보 암호화

구분	관련 법령
개인식별번호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0조,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5조 등

개인정보 처리

구분	처리절차	관련 법령
접속 및 처리내역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배치작업 시 처리내역 기록 접속 및 처리내역은 월1회 이상 주기적 점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47호)
접속 및 처리내역 확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로그검색기능 구현 관리자는 로그로 사용자의 작업행위를 확인 및 모니터링 개인정보 다운로드 발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감사합니다"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 오픈뱅킹팀 과장 정승훈 jshn100@kftc.or.kr